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3. 25.(화)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26호)
- 나. 회부일자: 2025. 3. 13.
- 다. 상정일자: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5. 3. 19.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재준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비율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내실있는 공동주택 지원으로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분담률 정비 및 비고 내용 추가(안 별표 1)
- 2) 민원편의를 위해 ‘큰글자 서식의 설계 기준’을 반영하여 서식 개선 (별지 제1호~제6호서식)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관리비용의 지원)
-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사전협의: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2025. 1. 31. ~ 2025. 2. 20. (20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 별지 서식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큰글자 서식의 설계 기준’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검임.

나. 검토 내용

- 안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1호가목의 표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1)의 구 분담률을 50%→ 60%, 공동주택 분담률은 50% → 40%로 변경함.

1)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마.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바.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동주택 현황 및 지원실적

□ 공동주택 현황

합 계		의무관리대상				임의관리대상				기타	
		분양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임대아파트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176	82,704	99	70,267	6	1,641	24	1,970	14	1,133	33	7,693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실적(최근 5년간)

(단위: 천원)

연 도	합 계		공동체 활성화		어르신 보안관		열린 아파트	
	단지수	금액	단지수	금액	단지수	금액	단지수	금액
2024	117	331,700	67	250,820	48	73,180	2	7,700
2023	143	386,607	88	290,256	52	76,352	3	19,999
2022	132	370,235	78	290,909	53	74,326	1	5,000
2021	124	417,644	68	305,288	52	89,839	4	22,517
2020	118	349,204	60	227,894	54	84,137	4	37,173

□ 2025년 공동주택단지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총 12억원, 전액 구비)

- 공동체 활성화 : 3억1,000만원
- 어르신 보안관 : 8,000만원
- 열린아파트 : 3,000만원
- 관리지원(재난안전, 에너지 절약, 기타시설, 근로자 시설 등) : 7억8,000만원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큰글자 서식의 설계 기준’ 2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약칭: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4조(서식 설계 기준) ① 영 제28조제8항에 따른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의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큰글자 서식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2.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3. 다수의 국민이 큰글자 서식으로의 개편을 요구하는 서식

다.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별지의 서식을 ‘큰글자서식의 설계 기준’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식

[전문개정 2021. 1.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26
------------	-----

제출년월 : 2025년 3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비율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내실있는 공동주택 지원으로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분담률 정비 및 비고 내용 추가(안 별표 1)

나. 민원편의를 위해 ‘큰글자서식의 설계 기준’을 반영하여 서식 개선 (별지 제1호~제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관리비용의 지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5. 1. 31. ~ 2025. 2. 20.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결과 : 별도 의견 없음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6)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7)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50	5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단,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는 100% 지원)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 참여연수에 따라 10~40% 자부담률 적용 -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은 시급성,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50	50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0	50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60	40	
5.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50	50	
6.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50	5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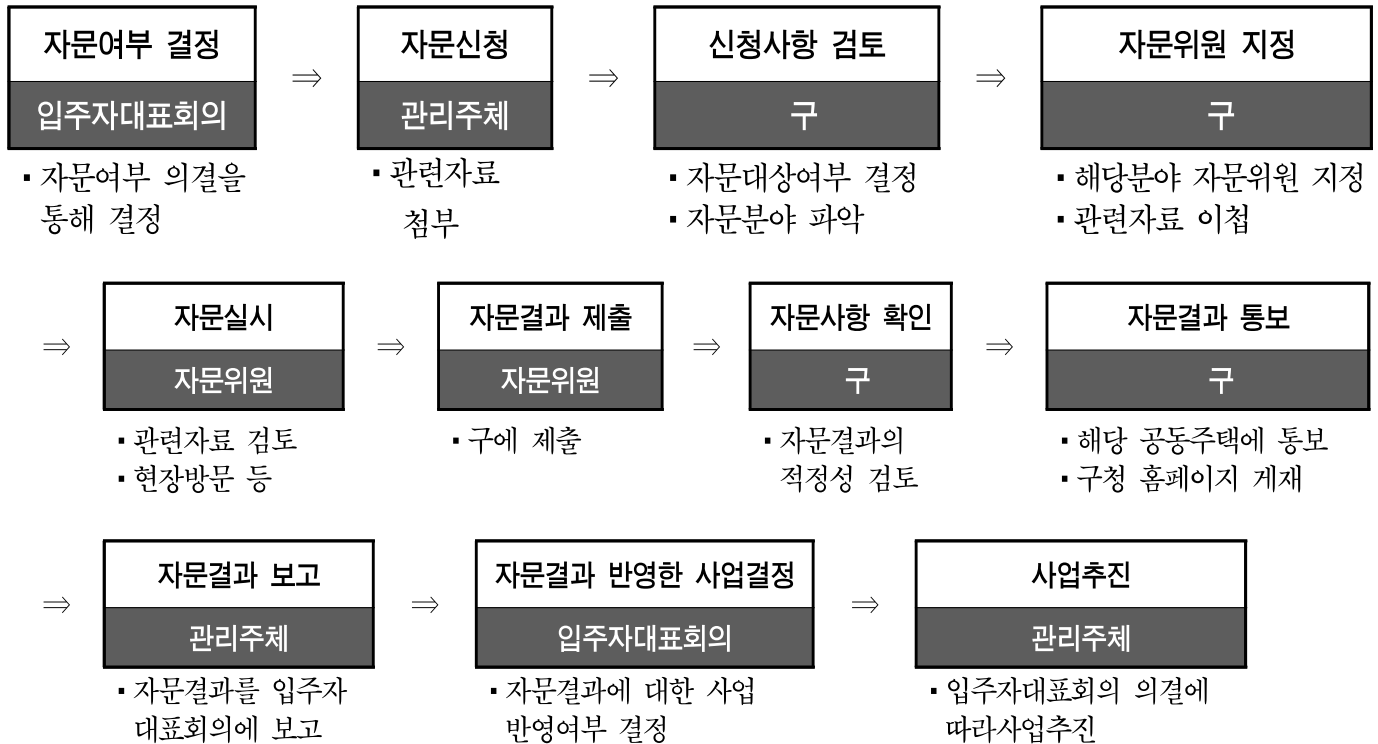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소급적용)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 공동체 활성화)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 자문절차



□ 처리기한 : 1개월

□ 자 문 료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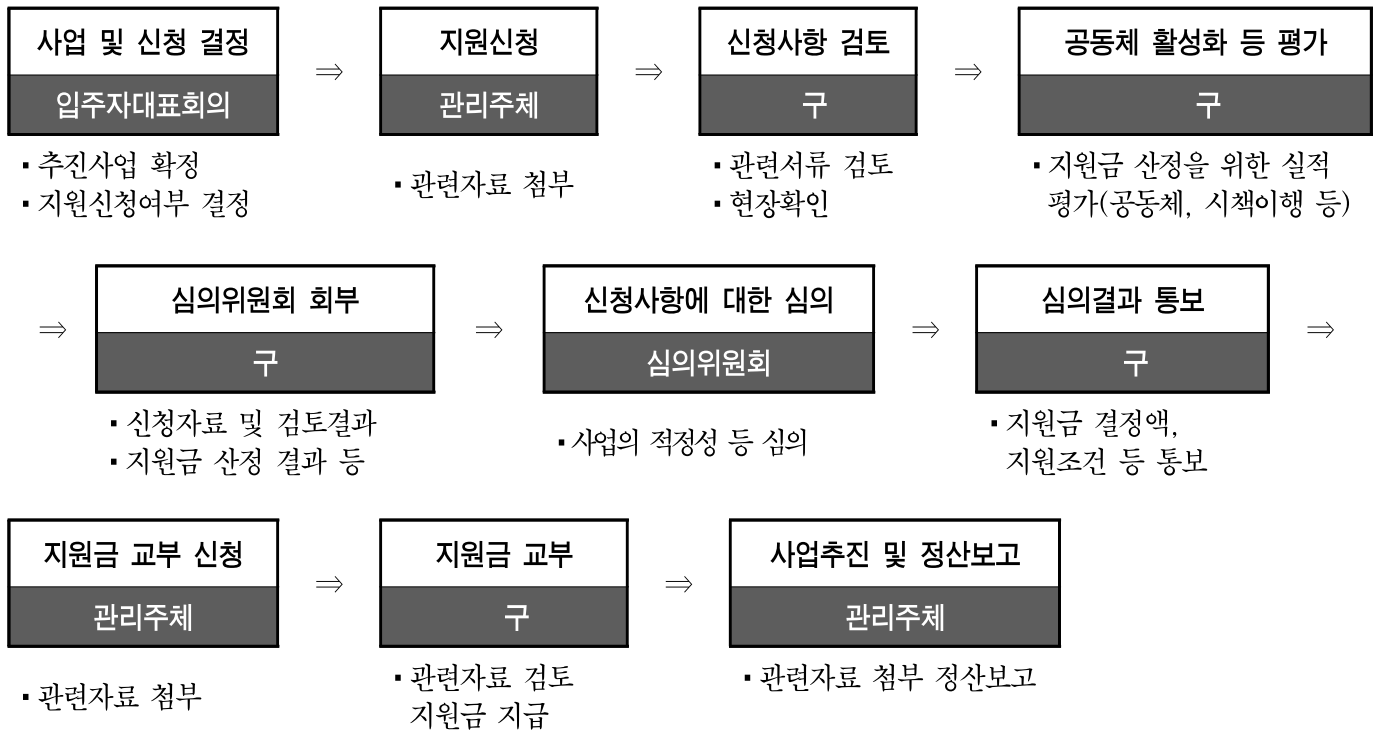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 용역 ■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성북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원신청 내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처리절차



지원 제외대상

-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나. 용도변경 등 허가가 필요한 시설로 허가를 받기 이전의 경우
-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시설
-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바.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원신청 내용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	발 주 자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착수년월일			
	준공예정일			
	기 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 부.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	총 액	자체부담액	지 원 액	
연장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원신청 내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 (단위: 천원)			실 집행액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②)
총 계						
반납액(①-②)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구 분 별 지 원 비율	공동주택 지원금 비율	비 고(중요사항)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50	5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2.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50	50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0	50	• 500세대미만 외주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50	50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5.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50	50	(단,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 시설은 100% 지원)
6.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50	50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한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한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별표 1] <개정 2023.12.28.>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구 분 별 지 원 비율	공동주택 지원금 비율	비 고(중요사항)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50	5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2.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50	50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0	50	• 500세대미만 외주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60	40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단,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100% 지원)
5.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50	50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한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6.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50	50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한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 참여연수에 따라 10~40% 차등지원 •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 시금성,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 공동체 활성화)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 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견적표일, 기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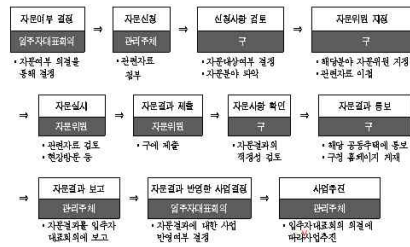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 공동체 활성화)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 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견적표일, 기타 등)				

(뒷면)

□ 자문절차



□ 처리기한 : 1개월

□ 자 문 료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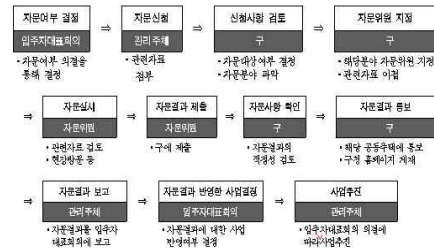
유의 사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또는 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구수, 재계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성북구의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 자문절차



□ 처리기한 : 1개월

□ 자 문 료 : 무료

유의 사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 용역 •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
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계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성북구의 공동주택관
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3.9>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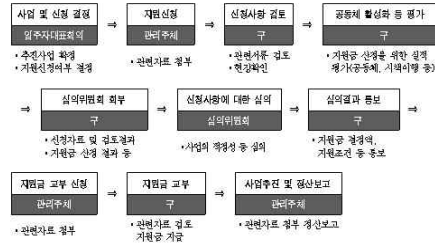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지원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책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주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별첨사건,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책당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지원신청 내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책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주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별첨사건,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책당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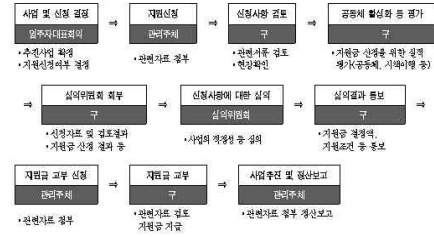


지원제외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가 필요한 시설로 허가를 받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작성)

처리절차



지원제외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가 필요한 시설로 허가를 받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 공동주택 협의회 □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위	공동주택명	동 수	동	동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재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과 관련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 공동주택 협의회 □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위	공동주택명	동 수	동	동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재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과 관련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 공동체 활성화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	발 주 자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기 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 공동체 활성화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	발 주 자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착수년월일			
	준공예정일			
	기 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 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	총 액	자체부담액	지 원 액	
연장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	총 액	자체부담액	지 원 액	
연장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 공동체 활성화 □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단위:천원)			실 집행액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②)
총 계						
반납액(①-②)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 공동체 활성화 □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원신청 내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 (단위: 천원)			실 집행액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②)
총 계						
반납액(①-②)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전·후 사진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본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장 오수이